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
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5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0. ~ 12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2025년 12월 25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4 중 “2025년 12월 25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한시정원)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5년 12월 25일까지</u>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 다.	제15조(한시정원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8